

교육과정심의위원회 규정

제정 2013. 3. 1. 개정 2013. 7. 1.
개정 2014. 3. 1. 개정 2015. 3. 31.
개정 2016. 6. 2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의 교육목표달성 및 교육과정과 강의평가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심의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함)의 활동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 <개정 2013.7.1.>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NCS지원센터장 및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을 포함한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1인 이상은 교육경력이 있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3.1., 2016.6.23.>

②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산하에 소위원회의 기능으로서 교육과정개선팀, 교수법개발팀 및 강의평가팀을 둘 수 있고, 팀장은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④ 교과 구분별 교과과정의 편성, 개편, 조정 및 연구 개발을 위하여 학과단위, 전공단위, 교양(교직 포함)단위로 분과별 교과과정위원회를 별도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위원장은 학부(학과)장이 되고, 교양분야는 교학처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4.3.1.>

⑤ 교육과정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 별도 위원회를 구성,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위촉한다.<신설 2015.3.31.>

제2조의2(교육과정개발위원회) ① 학과는 교육과정의 개발 또는 개편을 위하여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둔다.

② 교육과정개발위원회는 전임교원 전체와 산업체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과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의 임기 중 산업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기능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과정의 질개선을 위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
2. 재학생, 졸업생, 산업체의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
3.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와 학과의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심의
4. 교육과정개발(개편)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
5. 직무능력인증에 관한 사항

[본조신설 2016.6.23.]

제2조의3(교양교육심의위원회) ① 대학에 교양교육 및 인성교육 편성과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

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양인성교육심의위원회(이하 “교양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 교양위원회는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NCS지원센터장,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을 포함한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한 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④ 교양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교양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양교육운영 정책에 관한 사항
2.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와 개설된 교양교과목과의 연계성에 관한 사항
3. 교양교과목 개발 및 편성, 운영에 관한 사항

⑥ 교양위원회는 각 학과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학과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6.6.23.]

제3조(위원의 임기)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6.6.23.>

제4조(소위원회의 기능) 소위원회(팀)의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① 교육과정개선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.

1. 대학 교육목표달성 및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정책 수립과 개선에 관한 사항
2.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
3. 교양 및 전공의 학점 배분 및 최저이수학점수 등 학점 조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교육과정에 관련된 사항

② 교수법개발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.

1. 새로운 교수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2. 교수법 개선 및 보급에 관한 사항
3. 기타 교수법에 관련된 제반 사항

③ 강의평가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.

1. 강의평가용 설문 개선에 관한 사항
2. 강의평가 시행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3. 강의평가 설문 분석에 관한 사항
4. 기타 강의평가에 관련된 제반 사항

제5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(팀)별 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에 소집하며,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 <개정 2014.3.1.>

③ 팀별 회의는 팀장이 필요시에 소집하며, 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팀장이 의결권을 가진다.

제6조(준용)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에 의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